

서울역사박물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시 공동주최를 위한

# 협약서

서울역사박물관의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장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를 통해 공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향유와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인권의식 고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이 로비전시의 기간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서울역사박물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를 주최한다.
2.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시 장소로서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3. 전시 준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다.
4. 부대행사가 있을 경우 진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다.
5. 전시 홍보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6. 전기 및 멀티미디어, 디지털게시판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제공한다.
7. 기타 양측의 발전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비용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전시 제작, 설치 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한다.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로고사용) 본 협약을 통한 로비전시의 홍보물(배너 등)에는 양 기관의 로고가 들어간다.

제6조(시설물 사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역사박물관 시설물 사용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액을 배상한다.

제7조(협약이행) 양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제 규정을 수용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양측이 서로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제8조(책임과 의무) 양 기관의 상호교류에 있어 이 협약으로 정한 것 외와 협약의 변경, 해약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고 서울역사박물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기관명 : 서울역사박물관  
직명 : 관장  
성명 : 송인호



서명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직명 : 위원장  
성명 : 최영애



서명 :